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4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 대상 확대
- 나. 시간제 주차수요 대비 월정기권 수요가 월등히 높은 노상 주차장의 주차실태를 반영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와 주차 수입의 확충 필요

2. 주요내용

- 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대상 확대
 - 이용대상 : 여성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나. 시간제 주차수요는 낮고 정기주차 수요는 높은 노상주차장 중 주차실태 등 지역 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가족 배려 주차구획 설치 비용(795백만원)관련
'23년 추경 예산 반영 예정

※ 市 예산담당관 및 의회 협조 필요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22. 11. 3. ~ 11. 23.) 결과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제25조의2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각각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제4항(중

전의 제3항) 제2호 중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를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별표1 중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따른다.

별도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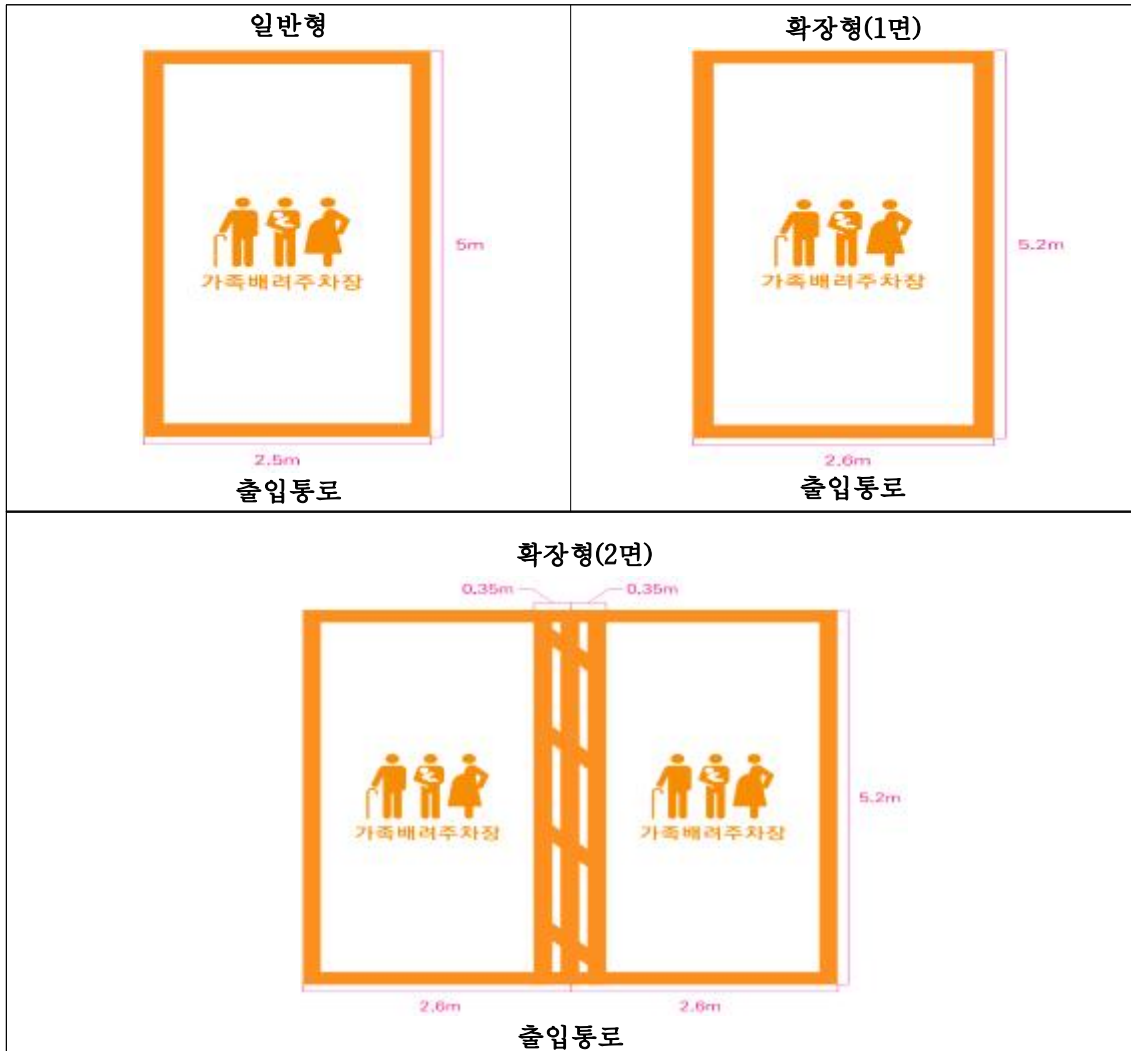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별도 제3호 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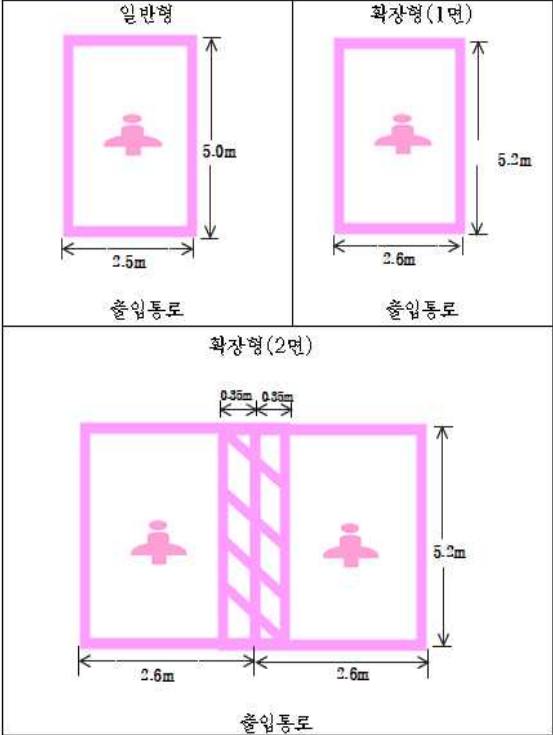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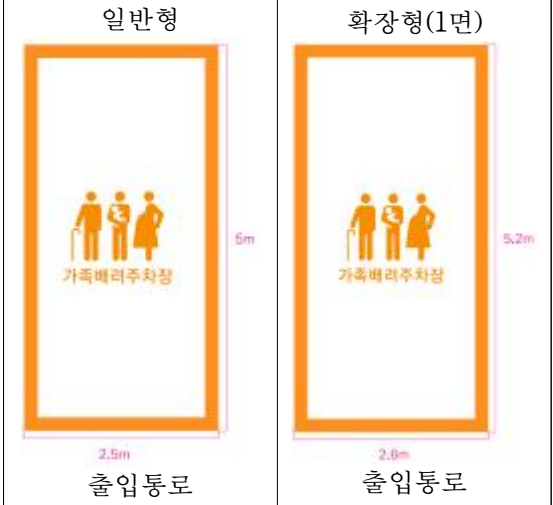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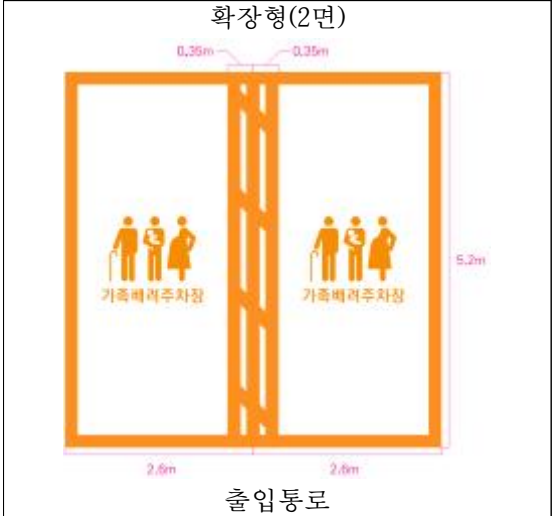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u>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u></p> <p><u><신 설></u></p> <p>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p>	<p>제25조의2(<u>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u>) ① ----- ----- ----- ----- ----- <u>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u> ----- ----- -----.</p> <p>② <u>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u></p> <p>1. 「<u>모자보건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u></p> <p>2. 「<u>영유아보육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영유아를 동반한 사람</u></p> <p>3. <u>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u></p> <p>③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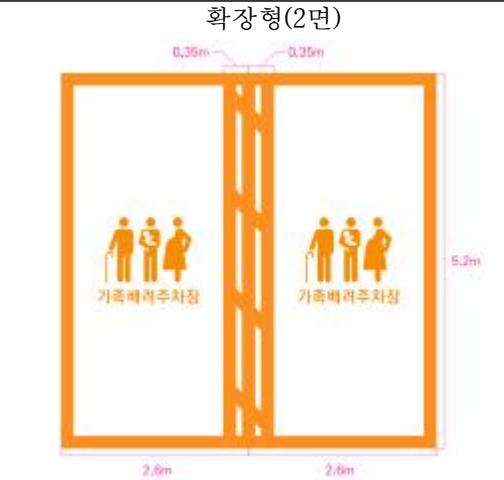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u>여성우선주차장</u>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p> <p>③ <u>여성우선주차장</u>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u>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u> 3. <u>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u> 4. <u>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u> <p>④ <u>여성우선주차장</u>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u>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u></p>	<p>-----</p> <p>-- <u>가족배려주차장</u> -----</p> <p>-----</p> <p>-----.</p> <p>④ <u>가족배려주차장</u> -----</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승강기, 계단과 가까워</u> ----- 3. <u>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u> 4. <u>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u> <p><삭 제></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44 315 416 353"><신설></p> <p data-bbox="205 450 778 555">[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p> <p data-bbox="205 584 703 622"><비고> 1.~9. (현행과 같음)</p> <p data-bbox="205 651 376 689"><신설></p> <p data-bbox="205 1122 485 1160">[별도 제3호 서식]</p> <p data-bbox="288 1178 708 1205">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p> 	<p data-bbox="842 315 1385 421">⑤ <u>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u></p> <p data-bbox="804 450 1385 555">[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p> <p data-bbox="804 584 1209 622"><비고> 1.~9. (생략)</p> <p data-bbox="804 651 1385 1093">10. <u>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따른다.</u></p> <p data-bbox="804 1122 1086 1160">[별도 제3호 서식]</p> <p data-bbox="804 1167 1385 120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p> 

현행	개정안
<p>- 비 고 -</p> <p>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p> <p>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p> <p>2. 색채</p> <p>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p> <p>3. 설치위치</p> <p>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p>	<p>확장형(2면)</p>  <p>출입통로</p> <p>- 비 고 -</p> <p>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p> <p>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p> <p>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p>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제6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p>	<p>(주차장 조례 제25조의2 관련)</p> <p>①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 - “우선”이라는 표현이 배타적이고 규제적인 어감을 가져 정책 비수혜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반감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긍정적 인식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배려”라는 표현으로 변경 필요</p> <p>② 이용대상을 별도 항으로 규정 -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항과 별도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p> <p>○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4항, 별도 제3호 서식)표시 변경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p> <p>< 개정안 수정안 > 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자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자를 동반한 자</p> <p>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p> <p>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p> <p>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p>	<p>(주차장 조례 제25조의2 관련)</p> <p>○ 반영 - 양성평등담당관(사업 주관부서)의 제출된 개정안 수정안 대로 변경</p>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p>[별도 제3호 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일반형</p>  <p>출입통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확장형(1면)</p>  <p>출입통로</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확장형(2면)</p>  <p>출입통로</p> </div>	
	<p>(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 제출된 의견 없음</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권 발행 근거 규정 신설
 -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 감소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사항 없음
-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市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1호)
 - 시(市) 공영주차장 여성우선 1,988면 × 400천원 = 795,000천원
 - ※ 1구획당 기존 삭선 및 신규도색 비용 400,000원 추정

4. 작성자 : 주차계획과 이선아(2133-2353)